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6.1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6.1.1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6.1.2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6.1.3 대상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내지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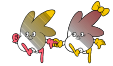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행정계획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에 한함.)
 -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한도로(고속국도 제외)건설공사 계획
- 개발사업
 - 개별법이 정한 보존지역내에서의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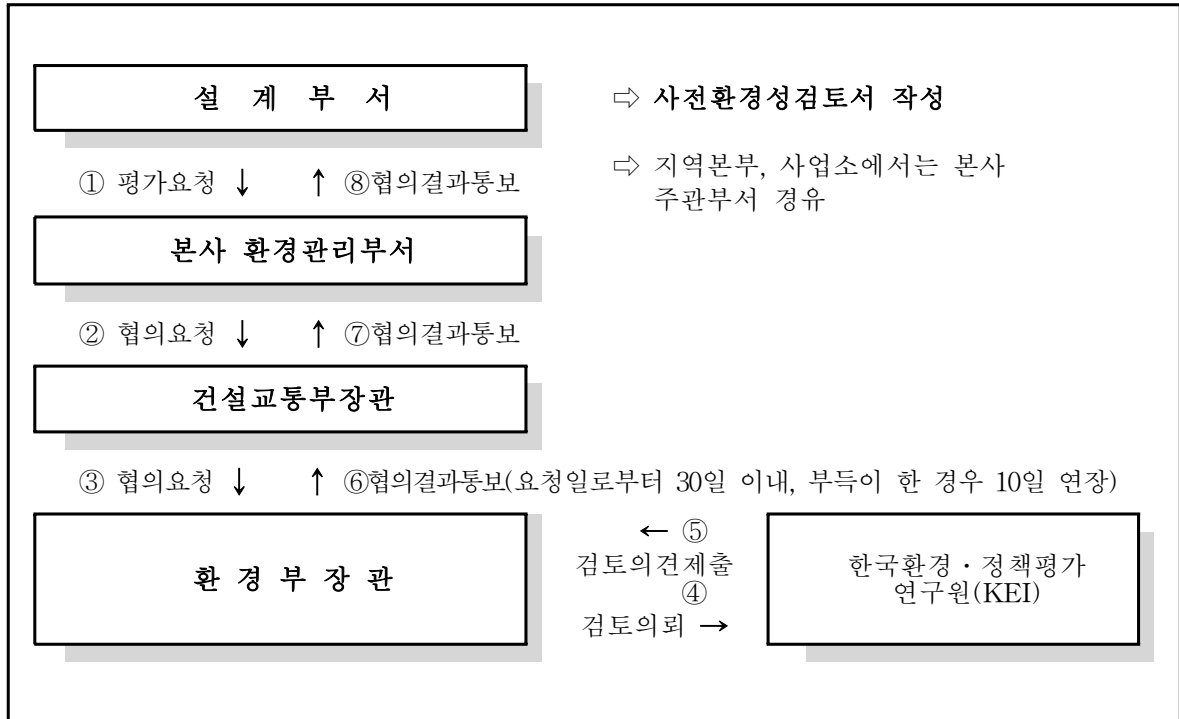
6.1.4 협의시기

-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전(타당성조사의 적정성 검토시)
- 개발사업의 경우 : 사업의 허가전. 즉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6.1.5 업무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6.1.6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법 제27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환경부장관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공사중지,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6.2 환경영향평가 제도

6.2.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가. 정의

도로건설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행위이다.

나. 관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다. 대상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1제1호마목 및 비고4호)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사업

- (1) 4km이상의 신설
- (2) 2차선이상으로 10km이상의 확장
- (3)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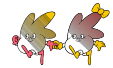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frac{\text{신설구간 길이의 합}}{4\text{km}} + \frac{\text{확장구간의 길이의 합}}{10\text{km}} \geq 1$$

- (4) 동일영향권 안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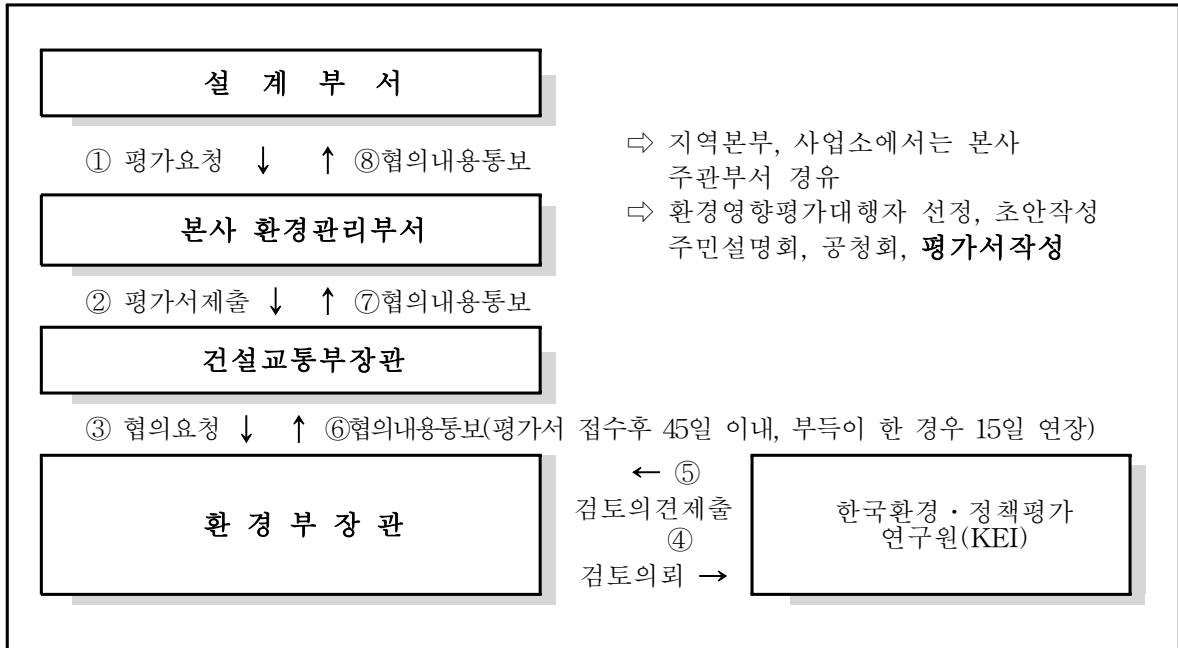
라. 협의요청시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마. 환경영향평가작성 및 협의



(1) 업무처리 흐름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⑦절차 반복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계획노선이 확정되고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환경질측정을 실시(통상 최소 2회 이상)한 후 작성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양식의 평가서초안요약서 함께 제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람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 이상

3) 주민설명회

- 초안평가서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 초기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 개최



4) 공청회

- 초안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거나, 5인 이상 30인 미만이라도 의견제출자의 50%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
-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음.

5)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

-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는 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작성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가) 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 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 건교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건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
 - 평가서 제출시기 :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 협의요청시기 :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

(나) 평가서의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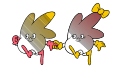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서가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을 요구
-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서를 작성 → 건교부장관 →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다) 평가서의 검토

- 환경부장관은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청회에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협의내용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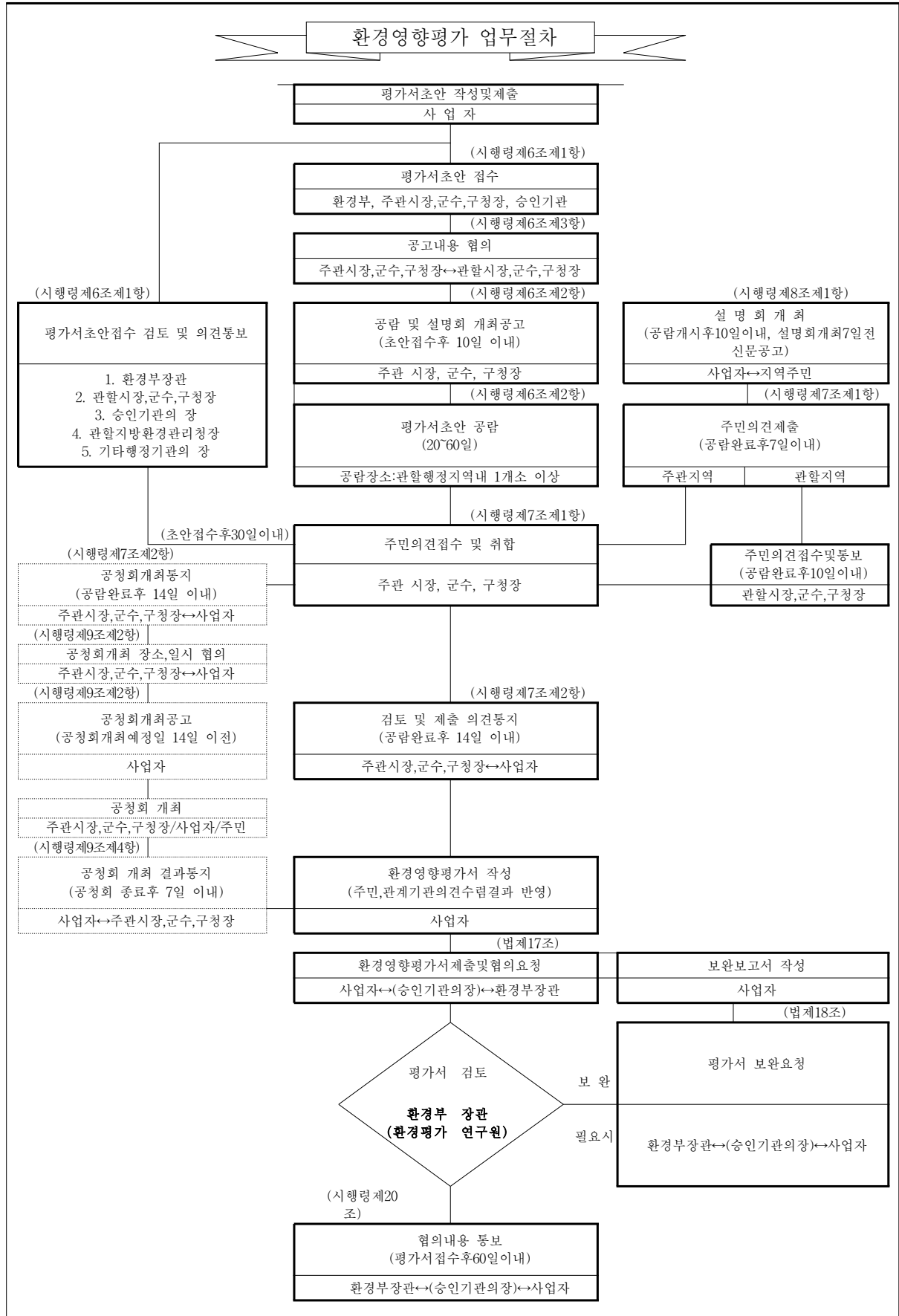
-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내용을 평가서를 접수한 45일 이내(부득이 한 경우 15일 연장)에 건교부장관과 의견 제출 전문가에게 통보
- 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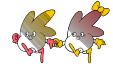


바. 사전공사시행의 금지 (법제28조제1항내지제2항)

-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재협의 또는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그러하지 아니함.
- 건교부장관은 협의·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사업승인(도로구역 결정)을 할수 없음
-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중지 명령 또는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







6.2.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가. 정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된 후 일정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당초의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 경우에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나. 관련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

다. 대상사업(시행령 제23조제1항내지제2항)

- (1)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 (2) 변경되는 사업 규모의 증가가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신설4km, 확장10km)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협의시기 및 업무절차

-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동일

6.2.3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

가. 정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나. 관련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다. 부과대상 및 기준

- (1) 부과대상(법49조제2항1호)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01.10.8이후에 도로구역 결정을 신청한 사업
 - '01.10.8이전에 도로구역 결정을 신청한 사업은 면제대상
- (2) 부과시점(법 제50조제1항)
 -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일(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부과



(3) 부과금액 산정기준 (시행령 제48조제1항내지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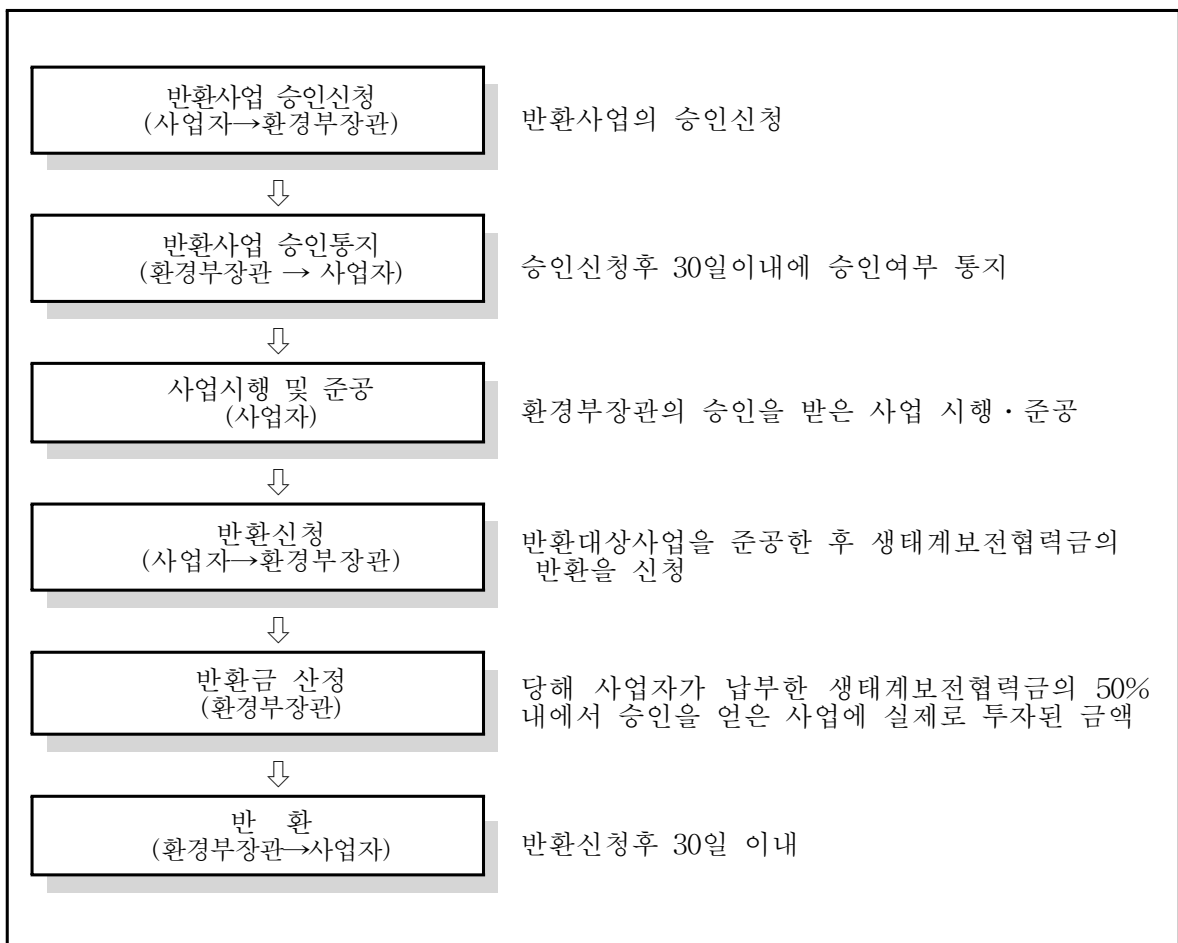
- 부과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지역계수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m²
- 부과상한액 : 5억원
- 지역계수 : 토지의 용도에 따라 0~4로 차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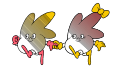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마.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1) 대상사업자

-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입한 개발사업자 (2) 반환대상사업(법49조제7항 및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등의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 단,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

(3) 반환금 신청 및 지급절차(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내지 제8항)





6.2.4 문화재지표조사

가. 정의

개발사업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조사대상 지역안에 있는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는 행위(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이다.

나. 조사대상 및 시기

- 1997.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 사업계획 초기, 실시설계 확정전까지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다. 보존조치의 유형

- 1) 현상변경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3) 이전복원 4) 시굴 또는 발굴조사 5) 사업시행



6.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6.3.1 정의

협의완료 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미리 승인 기관장(건교부장관)의 검토를 받는 행위이다.

6.3.2 관련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내지제2항

6.3.3 대상(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제24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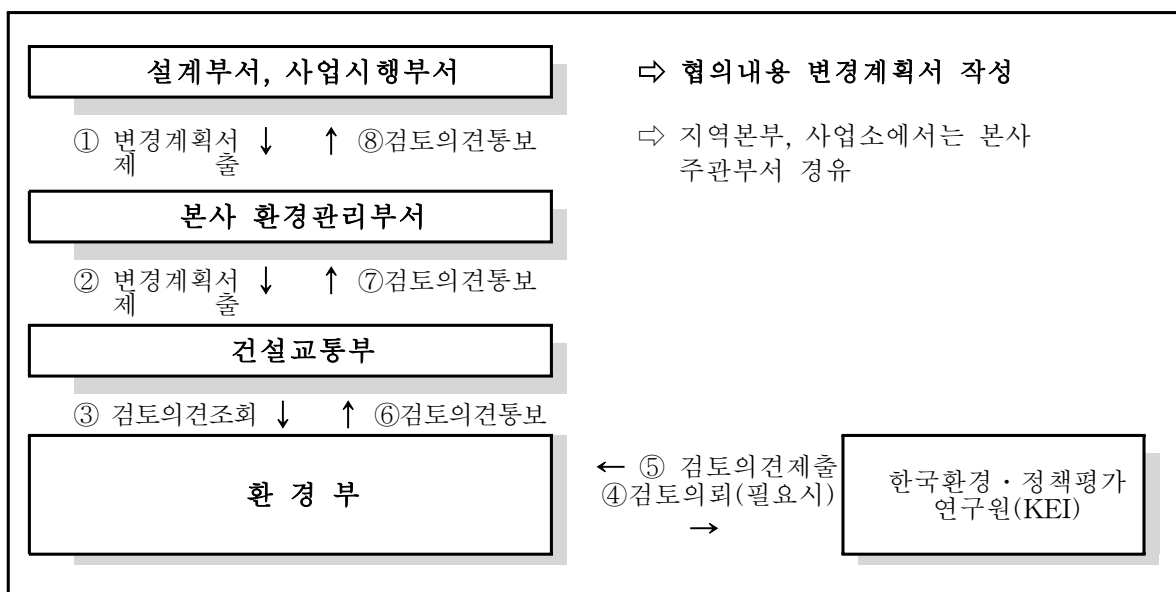
(1)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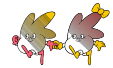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영향저감방안을 미리 승인기관장(건교부장관)의 검토를 받음.

(2)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변경되는 규모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5% 이상 30%미만 증가하는 경우
- 협의내용 통보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3.4 업무절차





6.3.5 사전공사의 금지 (법 제28조 제1항내지제2항)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교부장관은 협의·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사업승인(도로구역 결정)을 할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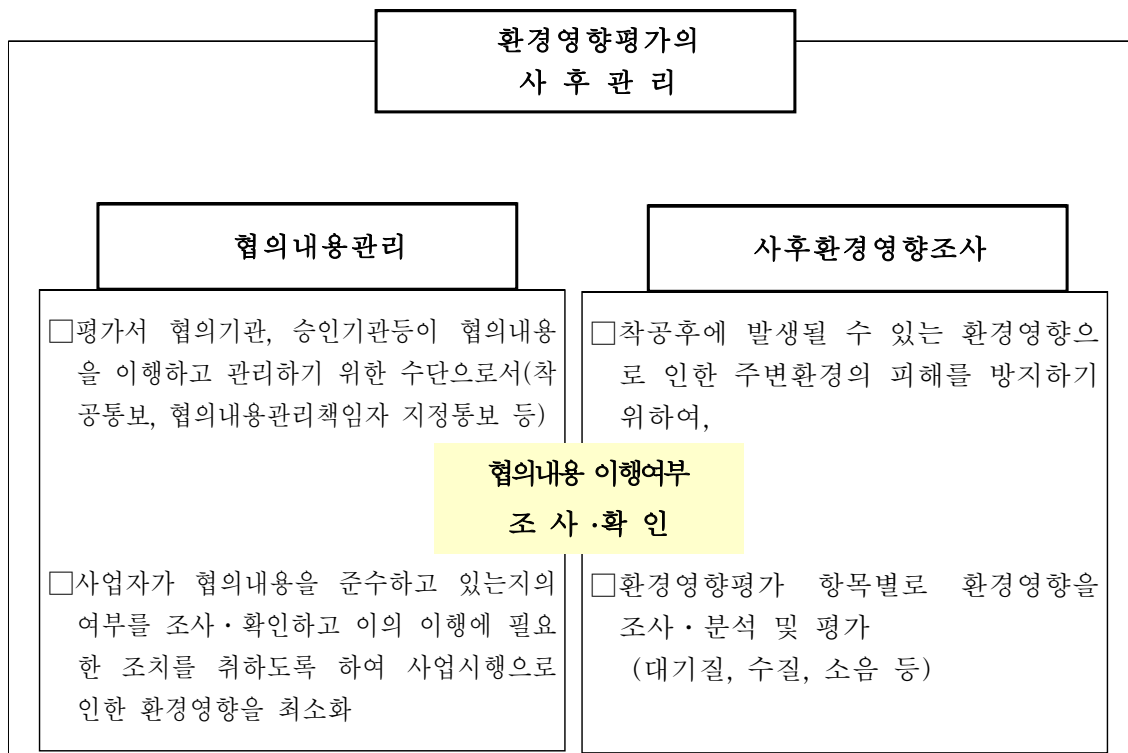


6.4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6.4.1 사후관리의 개념과 목적

가. 사후관리의 개념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기관과의 협의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일반적으로 「협의내용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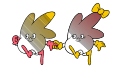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나. 사후관리의 의무

(1) 사업자의 의무(법제25조)

-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재협의내용 및 영향저감방안 포함)을 이행
-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
-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익년 1월31일 까지 지방환경관서에게 결과를 통보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도로의건설,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 3년까지

(2) 승인기관장의 의무(법제26조)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다. 사후관리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후관리 내용의 파악	- 협의 내용의 파악 - 저감방안의 파악 -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협의공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협의내용 이행 수단의 확보	- 저감방안의 구체적 방안 - 이행비용의 확보	설계도면 도급내역
행정처리사항	- 착공통보 - 협의내용관리 책임자 선정 통보 - 협의내용 관리대장 - 공사중지 통보(필요시) - 준공통보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사후환경영향조사	- 조사 범위 - 협의내용 이행 점검 - 환경질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및 빈도 등)	협의공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6.4.2 협의내용 관리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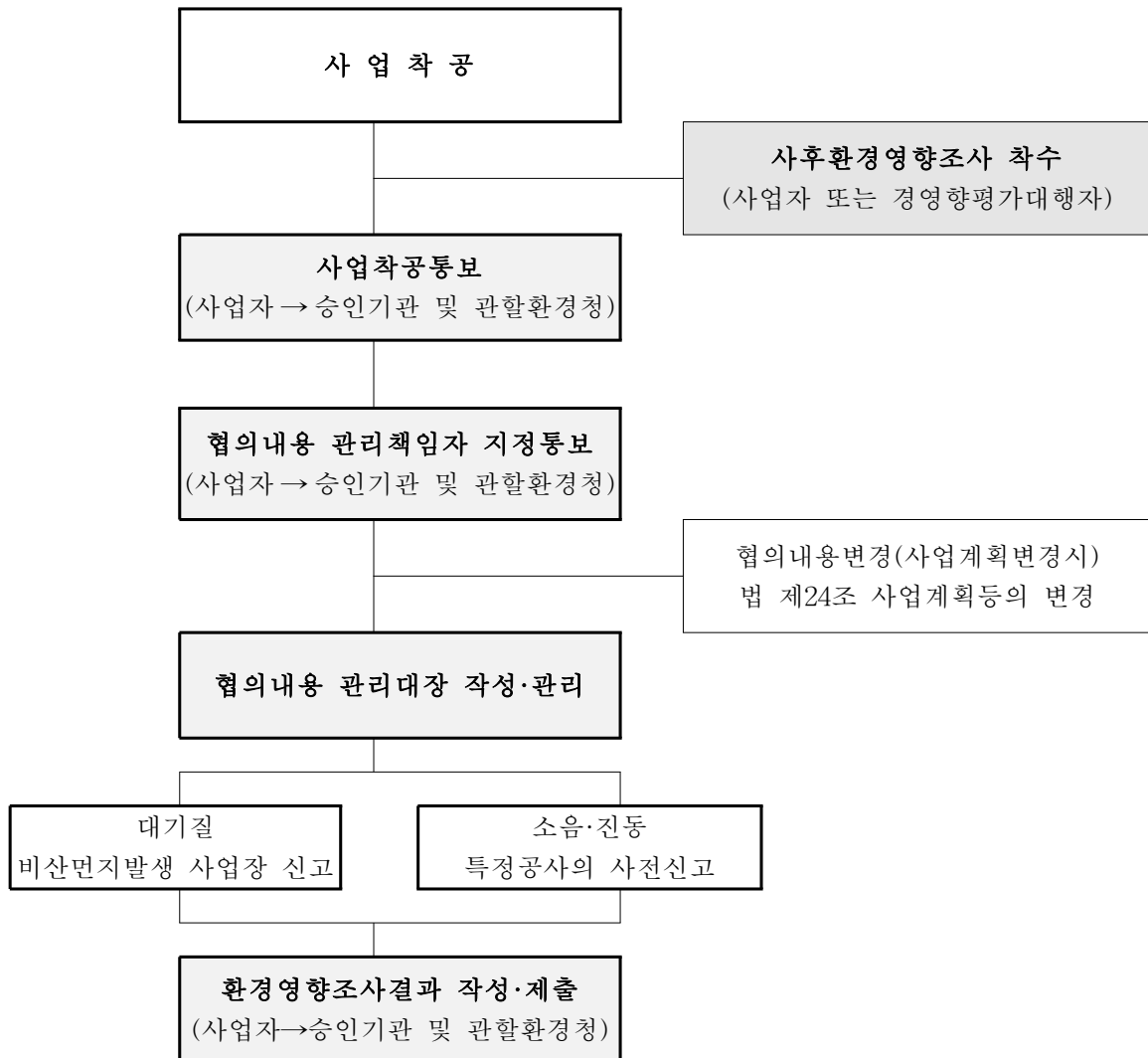
-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대한 협의기관의 내용에 대한 동의,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제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의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추가자료 및 협의기관이 승인기관에 통보한 모든 내용

나. 협의내용관리의 목적

-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음.



다. 협의내용관리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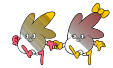
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1) 부과취지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확정된 평가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2) 대상시설

- 도로건설 현장의 주요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인 B/P, 터널 폐수처리시설
 - 현장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관리 등으로 방류수기준 및 협의기준 초과



사. 협의내용 이외의 환경관리

(1) 개별법령에 의한 관리

구분	개별법령	준수사항
대기질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제출 (28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10조) -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4조)
수 질	수질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또는 허가(10조)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4조)
	지하수법	- 지하수 개발 신고 (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9조)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24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30조)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30조)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2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17조)
소음·진동	소음진동규제법	- 특정공사 사전신고 (25조)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9조) -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3조)

6.4.3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환경영향조사

(1) 개 요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영향조사(환경질측정)과 협의내용이행점검으로 구분



(2)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 흐름도

